

2021년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1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3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26건(안건번호 제2021-123978호~1249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23978호~123980호(순번 1번~3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82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3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은 전부 공개하기로 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2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민원인이 2명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및 만화 불법 복제물을 각각 판매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3건임.

(순번 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27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화 전체 분량인 약 90분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4,5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경숙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로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합법적 방식으로 알고 있음. 시정 권고의 대상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일명 '비제휴콘텐츠'에 한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만약 비제휴콘텐츠가 제휴콘텐츠로 변경될 경우, 시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과거 심의위원회에서 채증 및 심의 당시 비제휴콘텐츠임이 확인되어 시정 권고하였으나, 조치 이후 제휴콘텐츠로 변경되어 해당 부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온라인보호부에서 불법복제물 채증 시 비제휴콘텐츠였으나 사무처에서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휴콘텐츠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결로 검토하고 있음.
- C 위원: 과거 웹하드 사이트 게시자가 제휴콘텐츠로 등록했던 게시물을 특정 시간대에만 비제휴콘텐츠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음. 채증 내지 심의 시점에 게시물이 제휴콘텐츠임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음.
그와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본 안전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번~93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 1,82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Don't hurry up'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Don't hurry up'을 1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9. 2.에 발매된 최신 국내 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게임 '원피스 해적무쌍 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원피스 해적무쌍 4'를 2,21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3. 26. 출시한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 판매 사이트 'STEAM'에서 64,800원에 판매중임.

(방송 '60일, 지정생존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4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60일, 지정생존자'를 69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1화~16화의 전체 분량인 약 74분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tvN에서 2019. 7. 1. ~ 8.

20. 총 16화 방영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2,200원에 대여하여 시청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4번~93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93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3978호~124908호(순번 1번~93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4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2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